



## 목 차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 신고 안내

I.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	1
□ 청소년대상 성범죄 .....	1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 .....	3
□ 취업제한 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 .....	4
□ 성범죄 경력 조회 .....	5
II.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	7
[별첨] 성범죄 경력조회 양식 .....	8

2008. 2.

□ 근거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내지 제46조(\*제45조 제외)

□ 내용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청소년대상 성범죄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제2항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동법 제7조)

- 여자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및 위계 · 위력으로 간음한 자
-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동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 추행) 및 추행한자
- 위 미수범도 처벌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 배포 등(동법 제8조)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미수범도 처벌)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청소년을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 청소년 매매행위(동법 제9조)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미수범도 처벌)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동법 제10조)

○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동법 제11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미수범도 처벌)

- 위계, 선불금 그 밖에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미수범도 처벌)

-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미수범도 처벌)

-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한 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한 자

○ 알선영업행위 등(동법 제12조)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위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 ·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 또는 강요한 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 또는 강요한 자

○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특수절도(미수범), 특수강도(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 흉기 기타 위협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 \* 친족범위 : 4촌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
- 신체장애,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제외한 미수범
-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미수범) ·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 제301조의 2(강간 등 살인·치사) · 제302조(미성년자등에 의한 간음) ·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함)
-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활동시설
  - ☞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 ☞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

####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 「아동복지법」 제16조의 아동복지시설
  -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지원시설과 같은 법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 ☞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장치(지역난방식 포함)
    4.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에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 □ 취업제한 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

-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취업중인 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거나 운영 중인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44조제1항, 제2항)
-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44조제3항)
-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법 제46조 제1항)

- ※ 취업제한 대상 산하기관·단체·시설 종사자 채용 공고문에 지원자격으로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 『‘06. 6. 30일 이후 발생한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확정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 된다』
  - 『‘08. 2. 4일 이후 발생한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 근거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내용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的 시설 또는 기관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 : 취업제한 대상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과 동일

### ○ 범죄경력 조회 방법 및 제출서류

#### - 조회방법

1. 취업(예정)자의 동의서를 받아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붙임 2)를 작성.
2. 해당시설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형사과)에 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붙임 1)를 제출
3. 관할 경찰서에서 회보하는 ‘범죄경력회신서(붙임 3)’에 기재된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를 참고하여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제출서류

-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붙임1]
-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붙임2]
- 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인·허가증

\* 부득이 한 경우 위임을 받아 대신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 기관장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제출.

## ※ 범죄경력 조회

- 요청자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 대상자 : 취업(예정)자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제외]

## ※ 동의서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http://www.youth.go.kr))

- 홈페이지(주요정책/현안이슈) → 청소년성보호 → 신상공개(자료실-26번)
- 양식선택 → 다운로드

##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 근거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 ○ 내용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 기관·시설 또는 단체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각종학교』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아동복지법」 제14조의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보육시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호제1호·제2호의 학원 및 교습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0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가족복지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5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청소년기본법」 제46조·제46조의2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 ※ 신고하여야 할 청소년대상 성범죄

- 취업제한대상 성범죄와 같음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앞 쪽)	
		처리기간	주 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육기관명		
	주소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 국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취업 또는 취업 예정 직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 또는 취업 예정자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_____ 경찰서장 귀하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표기합니다.			
구비서류 : 뒤쪽확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sup>2</sup>)

(뒤 쪽)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인·허가) 사본 등 청소년관련교육기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끝”

붙임 2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 국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택 :		핸드폰 :

상기 본인은 ○○학원(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활동시설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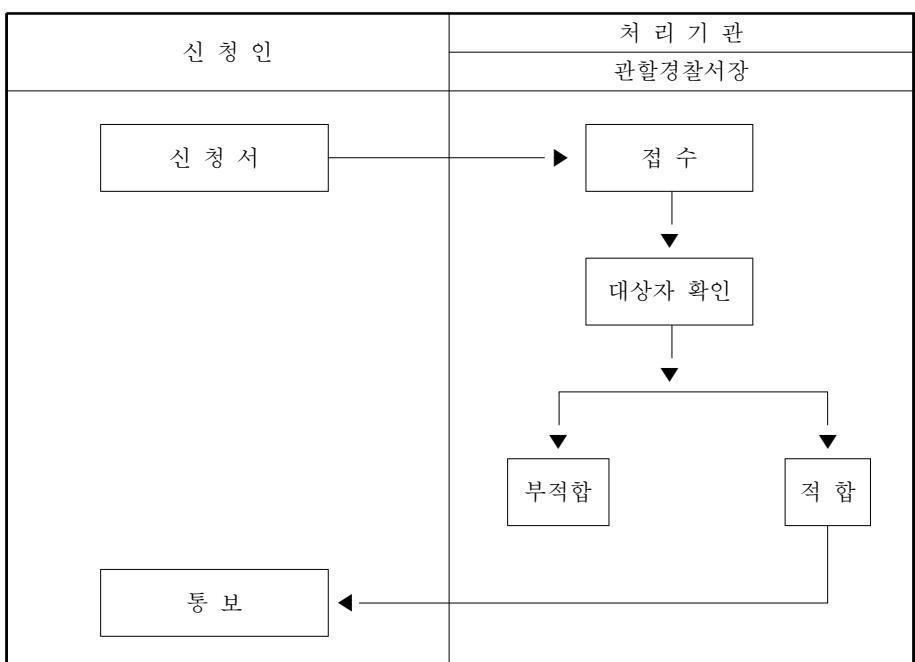
년 월 일

위 동의자 (인)

경찰서장 귀하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표기 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sup>2</sup>)



불입 3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대 상 자	성 명	(한 글)	(자국어)	
		(한 자)	(영 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 국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input type="checkbox"/> 있 음 (취업제한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없 음	
<p>「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_____ 경찰서장 (인)</p>				

210mm×297mm(보존용지(2쪽) 70g/m<sup>2</sup>)